



2024.7.1.부터
**공동주택(아파트)을
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
이륜차의 공회전도
제한됩니다.**



공회전 제한장소

주차장, 터미널, 차고지, 자동차극장,
공동주택 등



제한기준

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
공회전 시 과태료 5만원 부과



공회전 허용 기준

대기온도가 5°C 미만, 27°C 초과 시
냉·난방을 위해서만 허용

자동차배출가스

WHO (세계보건기구)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인체 발암물질로 지정

제한 근거

대기환경보전법,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



공회전 제한 문의 및 신고

경기도 콜센터 ☎120 / 각 시·군 환경관련 부서 문의